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발급을 위한 배치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점검인력 등 배치통보 기간을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관계인이 점검하여 배치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리업자가 사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하여 자체 점검 제출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현 자체점검 제출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여 계산하기에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발생하는 보고서 작성, 제출 기한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을 참고하여 제출기간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

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실시한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9조제1항)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
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9. ~ 8. 2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통보기간 3일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통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7일”을 “7일(단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점검인력 배치 상황 등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출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② (생략)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전 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 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통보기간 3일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통보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작 제

③ (생 략)

<신 설>

① -----

----- 7일(단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점검인력 배치 상황 등을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출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

	<u>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 다.</u>
--	-------------------------------